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제2008-124호
- 예고일자 : 2008. 4. 29~5. 19
-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02-2110-8377)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가능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규모를 완화하며, 건설기술자 및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나. 건설업자 및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건설자재·부재의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기준 등을 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다. 그 간('99 이후)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의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자체인력을 활용·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라.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품질관리업무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마.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과다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성실시공을 유도함.
- 바. 감리전문회사가 빈번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등록취소 요건(최근 3년간 5회 이상 ⇒ 5년간 3회 이상)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부실수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의 업무정지 처분기준(6개월⇒12개월)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 률 : 제2008-123호
- 예고일자 : 2008. 4. 29~5. 19
-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02-2110-8377)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불법대여 알선자 및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설계평가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근무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력 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대여)하여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불법 알선행위를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다.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포괄적인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폐지함.
- 라.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연구개발 협의체의 구성,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및 사업화 촉진,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의 확충, 연구개발 관련 국제 교류·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마. 일괄·대안입찰공사 등의 설계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갈음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제2008-189호
- 예고일자 : 2008. 5. 16~6. 5
-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02-2110-6305)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08. 3. 21)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시설물의 종류 중 용벽 등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여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나. 시설물에 대한 일률적인 안전점검 주기를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달리 정하여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시 등록분야별 또는 보유기술자의 기술 분야별로 실시범위와 대상 시설물을 명시함
- 라.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기준변경에 따라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정비하여 기술자 관리에 통일성을 부여
- 마.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자 자격요건을 조정하고 종합분야를 신설하여 등록분야 수에 따른 기술자 수 및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하되,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로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신설 등록요건을 보완할 기회를 부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 령 : 제2008-138호
- 예고일자 : 2008. 5. 2~22
- 담당부서 : 주택시장제도과(02-2110-8260)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개정이유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방법 및 청약자격 마련,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국민임대주택의 고령자 우선공급 근거 마련,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의 주택 특별공급 추가,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추가 등 현행 주택공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방법 및 청약자격 마련

- (1)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85제곱미터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임대, 국민임대등) 및 60제곱미터이하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공급
-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이내이며 그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 (3)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퍼센트 이하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인자에게 공급

나.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정책상 시·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

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 (1) 65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60세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공급 가능
- (2)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나이, 세대원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의 배점순으로 선정

라. 65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현행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의 20퍼센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범위안에 포함하여 우선공급

마. 10년이상 복무한 무주택군인에게 현행 국가유공자 등의 10퍼센트 특별공급 범위안에 포함하여 공급

바. 가점제의 당첨최소자중 청약시 단순 착오입력이 확인되는 경우의 당첨자 명단 삭제근거 명확화, 통장이 해약된 경우 해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근거 마련

전기사업법(안전관리분야) 유권해석 사례

01

• 제주도를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으로 볼 수 있는 지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는 동법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한 규정으로,
- 동 규정 입법취지로 볼 때, 『다목의 도서지역』은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기피할 정도의 낙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08. 04)

02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기술인력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른지역의 설계업체(주식회사)에 이사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2항[별표2]에 대행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와 대행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의 소속 기술인력이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04. 28)

03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자가용전기설비 장소에서 벗어난 임의의 장소에서 전기사고 발생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여부 및 한계
- 전기안전관리자가 월차 점검시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그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여부 및 범위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선임되어 있는 그 전기설비에 한하므로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설비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따라 임의장소의 전기사용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하여 고용된 관계로 고용주나 종업원의 도움없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서는 고용주 및 종업원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만약 전기사고발생시 사고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입니다.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점검 당시 이상이 없었으나, 그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의 유형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책임소재 및 범위가 정해지므로 법원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 그러므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은 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기록을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06. 10)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 사례

01

전력시설물공사를 ㉠공사(기자재 설치공사), ㉡공사(기자재 기초 및 기자재간 연결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고, ㉠공사에 대한 설계는 발주자가 직접 수행하고 ㉡공사에 대한 설계는 외부의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공사의 설계용역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사비”에는 ㉠공사의 “공사비”가 포함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용역대가는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비”에 대한 정의는 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등이 포함되도록 동 운영요령 제2조 제1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을 ㉠ 발주자 직접설계와 ㉡ 외주설계(설계업자에게 용역발주)로 이원화 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용역대가 산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전력시설물 중 일부분을 외주설계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특성상 전력계통보호시스템 구축(각종 보호장치 규격 설계)을 위하여 동일 수용가 내에서 외주설계 대상물과 전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주설계 용역비 산정시 발주자가 직접 설계하는 전력시설물의 자재에 대하여도 일정비율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며, 중국적으로 입찰공고문 등을 참조하여 설계용역발주자와 설계업자가 협의 조정하여 설계용역대가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29)

02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의 설계용역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대가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호)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3)

03

아파트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상의 결함을 규제하는 법령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 전력시설물공사의 경우,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우리부가 고시한 “전력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설계업자가 전력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골조, 벽체 등의 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25)

※ 관련 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 ①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전력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제29조(벌칙)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4

00대학교 건축공사현장으로 공사규모가 연면적 125,000㎡, 건축물층수 지하2층 지상12층인 경우에 설계감리대상에 해당되는 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설계감리등)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은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므로, 귀 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설계감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09)

생활속 법령상식

명예훼손죄는, 비록 한 사람에게 유포하였다라도 그것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가능하다.



글 _ 박종복 변호사

Q 직장동료 A는 마치 본인이 직장상사에게 돈 1,000만원을 갖다 주고 부정한 승진을 한 것처럼 동료 B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최근 확인한 결과 A는 비슷한 거짓말을 동료 C에게도 하였고, 동료 D에게도 하였다. A를 형사고소 할 수 있는가?

A 먼저 귀하가 직장상사에게 돈을 갖다 준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승진한 것도 아니라면 귀하로서는 A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간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법적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A는 B, C, D에게 각각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모인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A는 무죄인가? 여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귀하의 경우 A의 문제발언은 직장내 승진이라는 동료직원들의 민감한 관심사항에 대한 것이고 또 구체적인 돈의 액수까지 거론되는 등으로 비록 A가 B, C, D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이 외부로 유포될 전파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A의 발언을 문제삼을 만하다고 보여진다. 단 형사고소 이전에 B, C, D 등으로부터 충분한 진술 또는 E-mail 내용 등을 확보하여야 하고, 또 향후 직장내에서의 귀하에 대한 평가 등도 충분히 고려한 후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

영도소득세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야 할 것

글 | 정태화 세무사

1.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씨는 200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사돌 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즉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 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는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 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이사돌씨의 경우 2007년 2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 매입금액이 3,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100%인 경우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3,000,000원이며,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900,000원을 공제받으며 ②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50%인 경우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1,500,000원이며,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450,000원을 공제받는다. ③ 하지만 세금

계산서 수취비율이 0%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2. 세금계산서를 제 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07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7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때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

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①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②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6월)을 지나 7월에 교부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방문일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07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했다. 그런데, 방문일 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07년 8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천만원까지 부과된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받아야 한다. ❖